

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(요약)

1. 신청 단계

① (접근성 제고) ① 다양한 기술, ② 지배구조를 가진 우수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활용을 제고하고, 복잡한 제도를 ③ 수요자 관점에서 합리화

① 딥테크 등 첨단기술* 분야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**가 있는 경우, 기술평가를 2개 → 1개(단수평가)로 완화(“초격차 기술 특례”)

* 「국가전략기술육성법」,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 등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

** ① 시총 1,000억원 이상 & ② VC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

② 첨단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,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(단, 50% 이상 출자 시에는 제외)이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 허용(현재는 불허)

③ 현재의 복잡한 특례 제도를 유형별로 보다 합리적·체계적으로 재편*하여, 기업이 강점을 제대로 평가받고 상장하도록 지원

* [現] ‘기술성 트랙’ 기업에 대해 성장성을, ‘성장성 트랙’ 기업에 대해 기술성을 중점평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신청 트랙과 평가요소가 불일치하고 신청 유형이 복잡해지는 문제 발생 가능

☞ [改] ‘기술성 트랙’ 기업에 대해 기술성을, ‘성장성 트랙’ 기업에 대해 성장성을 중점평가하도록 트랙-평가요소를 일치시켜 신청 유형을 단순화

② (적극적 운용) 거래소 유인구조 개선* 및 맞춤형 상담회 정례화(분기별)

* 거래소 경영평가지표 내 특례상장 실적 비중을 확대

2. 심사 단계

① (심사 전문성 강화) 유인구조 개선*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의 기술특례상장 심사 참여를 유도하고, 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양적·질적 전문성 강화**

* 과기부·산업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기관평가 지표에 기술특례상장 심사 참여 실적 등 추가

** [量] 상장위원회 9인 중 기술전문가 2인 이상 참여 의무 / [質] 과기부 기술전문가 풀 활용 전문가 협의

② (기업친화적 심사) 기술특례상장 재도전 기업 대상 신속심사제도* 도입 및 「상장심사(거래소)-증권신고서 심사(금감원)」 간 중복 심사요소 정보공유**

* 기술성·사업성 외 요소 부적합으로 탈락한 기업이 6개월 내 기술특례상장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, ① 기술평가를 단수로 우선 실시하고, ② 심사기간도 단축(45→30일)

** [예] 거래소 상장심사 단계에서 심사한 기업계속성·경영투명성 항목에 대한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 →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 시, 거래소 정보를 토대로 기업계속성·경영투명성 등 신속 심사

3. 사후관리 단계

① (주관사 책임성 강화) 기술특례상장 기업 부실화 시, 해당 기업을 상장한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, 풋백옵션 등 추가조건 부과

② (정보 제공 강화) 영업실적 공시의 신뢰성 제고, 기술특례상장 종목 주가·주관사 관련 정보 제공 강화 ☞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투자 판단 지원